



2021. Jun / vol.1



PATENT NEWS LETTER



특허제도란?



주요 활동 소식



의료기술사업팀

√ 백승우 팀장
T: 031-219-4221

✓ 진성록 주임 (특허/기술이전) T: 031-219-4248

E:swbaek1@ajou.ac.kr E:bluerain@aumc.ac.kr

▍특허제도란?

특허제도의 목적

-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·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(특허법 제1조: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)
-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「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」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.
-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사상(아이디어)인 발명은 동산 등의 유체물과 달리 시각을 통해서 점유나 소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만약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어렵게 만들어 낸 신규 발명이 제3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- 반면, 발명의 보호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제3자가 타인의 발명을 이용할 기회가 사라져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됩니다.
-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법은 '발명의 보호와 이용'의 조화를 위해, 신규 발명을 하고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나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같이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 발달에 기여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.

특허권의 효력

- 특허 사정 후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.
-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(실용신안권 10년).
-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됩니다(속지주의).

▋ 특허제도란?

특허 요건

-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일 필요가 있습니다.
- 특허법은 이들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.

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(특허법 29조 1항 주서)

• 특허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산업으로서 실시 가능해야 합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은 서비스업, 운수업 등 생산을 동반하지 않는 산업도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을 의미합니다.

② 신규성 (특허법 29조1항)

- 발명이 주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하여도 국내외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유사-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이는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신규한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해당 발명을 보호하는 점에 있으므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과 같은 것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.

③ 진보성 (특허법 29조2항)

• 공지, 간행물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(신규성 요건 충족),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.

④ 최선의 출원일 것(선원주의) (특허법 39조)

• 먼저 발명을 완성하여도 같은 발명에 대해서 타인이 먼저 출원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한 타인의 출원이 등록됩니다.

⑤ 선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(특허법 29조의 2)

- 특허출원 내용은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출원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이전의 출원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
- 따라서, 출원 시에는 모른다고 하여도 출원 후에 당해 출원에 관한 발명과 동내용의 발명에 관한 이전의 출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.
- 이 경우 당해 출원은 최선의 출원이 아니며 새로운 발명도 아닙니다.
- 결국, 당해 출원 후에 공개된 이전의 출원이며, 당해 출원에 관한 발명과 이전의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⑥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(특허법32조)

• 도덕이나 윤리에 반한 발명이나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

주요활동 소식

BIO KOREA 행사 참여(6월 9일~11일)



국내·외 바이오헬스 시장 전반을 어우르며 국제적 정보교류 및 기술거래의 장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산업 컨벤션

아주대학교병원 홍보 부스 설치



✓ 독립 부스를 설치하여 병원 및 주요 기술 소개 ✓ 바이오 기업과의 비즈니스 교류

- 연구중심병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소개
- 유닛 과제 구성(4개 세부과제) 소개
- 차별화된 강점 소개
- 사업화 유망기술 포스터 전시
- SMK 배포
- 의료기기, 의약품 등의 바이오 기업과의 교류

아주대학교병원 교원창업 제품 홍보







- ✓ ㈜플라리트 메디컬 플라즈마 의료기기 소개
- ✓ Dr. Sanicle 손청결제 제품 소개
- ✓ ㈜나인비 아이본-S, 산수유정 제품 소개
 - 부스 방문객 대상 제품의 특장점 소개 및 홍보

바이오 기업 기술상담 진행



) HUGEL -

- 실용화 단계의 연구 및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음
- 아르곤 가스 플라즈마 기술, 의약품 관련 기술 문의

N BIO

- 건강기능식품 유통, 기능성 마스크팩 제조社
- 진피층 흡수, 침투 관련 의료/미용기기 기술에 수요가 있어, 카달로그 송부 예정임



-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연구개발 진행 중임
- 아토피, 염증 가려움, 상처 치료 관련 문의

KBBIO

여드름, 세정, 여성청결제 등의 기존 제품에 플라즈마 적용이 가능하므로, 관련 기술 도입 희망



- 리프팅 실 및 필러 제품 제조社
- 화장품 조성물 관련 기술 수요 존재하여, 추후 기술 수요조사서 받을 예정

PURITECH

- 플라즈마 의료기기 관련하여 제품 유통 구조 문의
- 생산 규모 파악
- 습진, 땀 관련 화장품 기술 및 제품 소개 희망